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4
----------	-----

2019. 9. 2.(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허창원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8월 22일

－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허창원 의원)

가. 제안사유

○ 장애등급제 폐지(7.1.)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설 설치·운영 및 허가사항 추가(안 제7조)
 -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 장애등급 인용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
 - 1~6급까지의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1~3급까지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곽영학)

-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과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은 제도의 개선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규정은 청년일자리 확대나 사회경제적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청남대 내에 물품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삭제를 희망하는 의견을(문의면 대표단체 연합회) 접수 받았으나, 의견 제출자가 제시한 반대사유는 앞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어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남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판매소 설치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청년실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돕도록 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4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3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
----------	-----

발의연월일 : 2019년 8월 13일

발 의 자 : 허창원, 전원표, 송미애,
연철흙, 이옥규, 정상교
최경천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판매시설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의 허가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설치·운영 및 허가사항 추가(안 제7조)
 -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 장애등급 인용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
 - 1~6급까지의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1~3급까지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관련부서 협의 :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7. 19 ~ 8. 8.(20일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및”을 “중”으로, “1~6급까지의 장애인”을 “등록된 장애인”으로, “단”을 “다만”으로, “1~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변”을 “충청북도와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충북에 거주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8.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입장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7. (생략)</p> <p>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6급 <u>까지의 장애인</u>에 한하며 단, 1~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p> <p>9. (생략)</p> <p>③~⑤ (생략)</p>	<p>제4조(입장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7. (현행과 같음)</p> <p>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u>등록된 장애인</u>에 한하며 <u>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p> <p>9. (현행과 같음)</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p> <p>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u>주변 지역경제 활성화</u>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u>범위 내에서</u>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p> <p>1~6. (생략)</p> <p>(신설)</p> <p>(신설)</p> <p>7. (생략)</p> <p>②~④ (생략)</p>	<p>제7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p> <p>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u>충청북도</u>와 <u>주변 지역경제 활성화</u>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u>범위에서</u>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p> <p>1~6. (현행과 같음)</p> <p>7. <u>충북에 거주하는 청년일자리 지원</u>을 위한 판매시설</p> <p>8. <u>충청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u>을 위한 판매시설</p> <p>9. (생략)</p> <p>②~④ (생략)</p>

관련법령 발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